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대상 확대 〉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4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모경종의원 대표발의(제2206754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대상 확대(안 제19조 후단 신설)	3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4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 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대상 확대(안 제19조 후단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용도별 번호판 색상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 ----- ----- <u>인</u> <u>경우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 <u>1.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u> <u>2. 비사업용 자동차</u> <u>가. 일반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u> <u>나. 외교용 자동차(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토</u>

현행	개정안
	<u>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갑청색바탕에 흰색문자</u> <u>다. 1)부터 3)까지의 법인 등 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문자</u> <u>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u> <u>2)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자동차.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u> <u>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u>

현행	개정안
	<u>여한 승용자동차</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9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에서는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범위와 번호판의 색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¹⁾

-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법인업무용 자동차는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②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차량들의 등록번호판 색상을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법인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법인차량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사적 이용 자제를 유도하려는 것임.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24.12.26.기준)

최초 취득가액 구간	등록대수
8천만원 ~ 1억원 미만	6,885
1억원 ~ 1.2억원 미만	5,647
1.2억원 ~ 1.4억원 미만	3,667
1.4억원 ~ 1.6억원 미만	2,310
1.6억원 ~ 1.8억원 미만	1,668
1.8억원 ~ 2억원 미만	693
2억원 초과	2,070
합계	22,940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구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용번호판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다운계약 등 현행 제도를 우회하여 회피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이용 자제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국토교통부는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전용번호판 제도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2022. 4),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2023. 1)를 거쳐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2023. 12. 28)하였음.

이 중 공청회에서는 모든 법인용 업무용자동차에 대해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중·저가 차량의 경우 회사명 및 로고 등이 외관에 부착되어 사적 사용 가능성이 낮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의 기준이 되는 가격대인 8,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전용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하였음.²⁾

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주요 추진경과 >

- ('22.4)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연구용역(자동차안전연구원, '22.4~12)
 - * (내용) ①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②디자인 시안 ③성능·내구성 시험 등
 - ※ (연구용역안) 모든 가격대의 법인 소유 승용차 대상(민간 렌트차량 불포함)
- ('23.1)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 * (리스업계) 리스 수요가 렌트차량으로 이동(풍선효과)하는 부작용을 고려 렌터카도 포함
 - * (렌터카업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중·저가 차량 제외 필요
- (~'23.11)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검토 및 개정 추진
 - ※ 민간 렌트차량 포함 및 8,000만원 기준가격 설정
- ('23.12.28)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24.1.1) 제도 시행

자료 : 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등록번호판 부착 적용 대상 차량은 총 약 144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³⁾되는데, 이에 따라 업계 쪽에서는 등록번호판 교체 등의 행정비용 부담 및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법인전용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추정치 >

합계	관용 차량	법인 소유	법인 리스	법인 렌트
144.1만대	3.4만대	82.7만대	23만대	35만대

주. 2022년 누적등록대수 기준 집계

자료 : 국토교통부

3) 다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대여하는 차량에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고 있어 기존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연수 도래 등으로 차량 교체 시 순차적으로 번호판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목적인 ‘다운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법인 승용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및 행정안전부의 과세 표준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법인 차량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다운계약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 중·저가 법인차량에 대한 전용번호판 부착의 실효성 측면과 다운 계약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방안의 효과성, 개정안에 따른 사업체 등의 행정비용 부담 및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자동차 번호판의 구체적인 색상을 법률로 모두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번호판 색상의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으나, 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법체계에서는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포함한 규격 재질 등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회피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나, 등록번

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의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법령 체계를 고려시 법률 개정 불필요함.

당초 제도 취지(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 제도에 대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세법상 처분, 등록말소 등)를 통해 관리 예정임.

2) 법무부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함이 원칙이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현행 고시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섭하기 어려워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 검토 필요함.

3)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연두색번호판을 모든 법인차량에 부착시 고가차량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주목도가 떨어짐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 있음.

번호판 교체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업체와 사업자의 불편 증대가 우려되고, 공익신고, 세무조사, 운행기록부 제출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다운계약 및 사적 사용 문제 해결이 바람직함.

렌터카는 법인 외 개인에게도 잦은 대여가 이루어지므로 잦은 번호판 교체에 따른 중소 렌터카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며, 렌터카는 이미 ‘하, 허, 호’ 번호판 표시로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

4) 서울특별시대여사업조합

고가 차량의 사적사용 방지라는 제도의 변별력 상실 등 제도도입 취지 감소 및 불필요한 비용부담 유발이 우려됨.

렌터카 업계는 95%이상이 영세사업자이며, 차량에 대한 잦은 계약 변동(개인↔법인)으로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소비자의 렌탈료 상승 야기가 우려됨.

다운계약 등은 탈세에 대한 조사, 관리감독 강화로 최소화가 가능함.

렌터카는 고가차 비중이 낮은 상황이며(1억 이상의 고가차 비율이 3% 미만), 렌터카는 이미 ‘하, 허, 호’ 번호판 표시로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

5)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번호판 색상 등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로 관리
중으로 상위법령 상향 개정 불필요하고 다운계약 등 탈세 방지 목적이
라면 해당 규정 강화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법인차로
의 확대는 구매 위축 등 시장 악영향이 우려됨.

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도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책 일관성·신뢰도 유지
가 필요함.

법인 업무용자동차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으
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 관련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8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하고 3mm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Delta E^*_{ab} \leq 3$ 으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분홍빛 흰색	L* = 89.10 a* = 0.58 b* = 3.95	보라빛 검은색	L* = 25.70 a* = 0.10 b* = -5.48
노랑색	2.5G 4/10	적색	5R 4/14
황색	2.5Y 8/16	청색	2.5PB 3/13
보라색	5PB 3/10	감청색	7.5PB 2/8
흰색	N9.5	검은색	N1.5
연녹색	L* = 73.37 a* = -21.17 b* = 53.88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필름 바탕색은 다음과 같이 하며, 태극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2에 의한다.

1) 일반용 : 필름 바탕색은 다음 국가기술표준원의 KS T 3507에 적합해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1		2		3		4	
	x	y	x	y	x	y	x	y
흰색	0.303	0.300	0.368	0.366	0.340	0.393	0.274	0.329

2) 법인업무용: 필름 바탕색은 다음 CIE L*a*b* 표색계에 따르며, 허용오차(ΔE_{00})는 CIEDE2000 총색차식을 적용하여 5이하로 한다.

색상명칭	색변환표
연녹색	$L^* = 71.15$ $a^* = -30.67$ $b^* = 60.02$

⑤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별표 제18에 의한다.